

[정 정 대 비 표]

■ 정정 집합투자기구 및 정정 서류

편 드 명	BNK KOSDAQ150분할매수목표전환형증권투자신탁1호(혼합-재간접형)
정 정 서 류	(간이)투자설명서
정 정 사 유	운용전문인력 변경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
효 력 발 생 일	2022년 09월 16일

■ 정정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[요약정보]			
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 변경	* 부책임용전문인력 : 권도균	- 2022.09.01 기준으로 업데이트 * 부책임용전문인력: 조동훈

[투자설명서]

항목	정정사유	정정 전	정정 후
용어 변경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- <u>대차대조표</u>	- <u>재무상태표</u>
[요약정보]			
운용전문인력	운용전문인력 변경	* 부책임용전문인력 : 권도균	- 2022.09.01 기준으로 업데이트 * 부책임용전문인력: 조동훈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-	-	- 2022.09.16: 운용전문인력 변경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운용전문인력 변경	* 부책임용전문인력 : 권도균	- 2022.09.01 기준으로 업데이트 * 부책임용전문인력: 조동훈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가. 투자 대상 ① ~ ② (생략) ③ 채권: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, 전자단기사채등	가. 투자 대상 ① ~ ② (현행과 동일) ③ 채권: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(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), 사채권(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- 이상이어야 하며, 사모사채권,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), <u>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</u>

		<p><u>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단기사채등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</u></p> <p>④ 자산유동화증권: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,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“자산유동화증권”이라 한다)</u></p> <p>⑤ ~ ⑪ (생략)</p> <p>나. 투자 제한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이 투자신탁 ~ 있다.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--- (생략) ---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) 또는 어음, <u>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,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, --- (이하 생략) ---</u></p> <p>다. (생략)</p> <p>③ ~ ⑨ (생략)</p>	<p><u>따른 단기사채등(이하 “채권”이라 한다)</u></p> <p>④ 자산유동화증권: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또는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이하 “자산유동화증권”이라 한다)</u></p> <p>⑤ ~ ⑪ (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투자 제한</p> <p>① (현행과 동일)</p> <p>② 이 투자신탁 ~ 있다.</p> <p>가. (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--- (현행과 동일) ---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(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) 또는 어음 또는 <u>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(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), --- (이하 현행과 동일) ---</u></p> <p>다. (현행과 동일)</p> <p>③ ~ ⑨ (현행과 동일)</p>
<p>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</p>	<p>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p>	<p>가. (생략)</p> <p>나. 환매</p> <p>(1) (생략)</p> <p>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</p> <p>(가)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</p> <p>-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제2영업일(D+1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제4영업일(D+3)</u>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p> <p>(나)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</p>	<p>가. (현행과 동일)</p> <p>나. 환매</p> <p>(1) (현행과 동일)</p> <p>(2)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</p> <p>(가)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</p> <p>-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2영업일(D+1)</u>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4영업일(D+3)</u>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</p> <p>(나) 오후 3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를</p>

		<p>청구한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제3영업일</u> 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제4영업일</u>(D+3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 <p>(3) ~ (8) (생략) 다. (생략)</p>	<p>청구한 경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<u>3영업일</u> (D+2)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<u>4영업일</u>(D+3)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. <p>(3) ~ (8) (현행과 동일) 다. (현행과 동일)</p>
12.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p>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</p> <p>산정방법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대차대조표상</u>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 을 그 공고·게시일 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,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</p>	<p>가.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</p> <p>산정방법: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<u>재무상태표상</u>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(이하 "순자산총액"이라 한다) 을 그 공고·게시일 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,000좌 단위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.</p>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	-	- 보수 및 수수료 부분 비용 관련 주석 추가
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p>가. 이익배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 <p>(이하 생략)</p>	<p>가. 이익배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 <p>(이하 현행과 동일)</p>
제4부.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반영 등	<p>-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사 연혁 추가 - 자본금: <u>260.5억</u> 	<p>- 2022.09.01 기준으로 업데이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사 연혁: <u>2021.05 자본금 증자 (+156.25억)</u> - 자본금: <u>416.75억</u>
제5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		
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	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	<p>가. 정기보고서</p> <p>(1) (생략)</p> <p>(2) 자산운용보고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한국예탁결제원</u>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<u>직접</u> 또는 <u>전</u> 	<p>가. 정기보고서</p> <p>(1) (현행과 동일)</p> <p>(2) 자산운용보고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<u>전자등록기관</u>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<u>직접, 전자우</u>

		<p>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 (이하 생략)</p>	<p>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제 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,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. (이하 현행과 동일)</p>
--	--	---	---

<끝>.